

## 【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】

### ◎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 절차(예시)

① 과세대상 연금액	25,000,000원	총연금수령액 - 연금제외소득(2001.12.31.이전분)		
② 연금소득공제	7,400,000원	630만원 + 1,400만원 초과금액의 10%		
③ 연금소득금액	17,600,000원	①과세대상연금액 - ②연금소득공제		
④ 인적 공제	기본공제	본인	1,500,000원	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자
		배우자	1,500,000원	
	추가공제	경로우대	1,000,000원	
⑤ 과세 표준액	13,600,000원	③연금소득금액 - ④인적공제		
⑥ 산출 세액	816,000원	⑤종합소득 과세표준액 × 6%(세율)		
⑦ 표준세액공제	70,000원	거주자 표준세액공제		
⑧ 결정소득세	746,000원	⑥산출세액 - ⑦표준세액공제		
⑨ 결정지방소득세	74,600원	⑧결정소득세의 10%		
⑩ 기납부소득세	850,000원	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 계		
⑪ 기납부지방소득세	85,000원	1년간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계		
⑫ 차감징수소득세	-104,000원	⑧결정소득세 - ⑩기납부소득세		
⑬ 차감징수지방소득세	-10,400원	⑨결정지방소득세 - ⑪기납부지방소득세		
⑭ 차감징수세액 계	-114,400원	1월 연금 지급 시 환급		

### ◎ 연금소득 공제<소득세법 제47조의 2, 최대 900만원 한도>, 과세 대상 연금액 단계별로 연금소득 공제

과세대상 연금액	공 제 액
350만 원 이하	총 연금액(과세대상 연금액)
350만 원 초과	350만 원 + 350만 원 초과금액의 40%
700만 원 초과	490만 원 +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%
1,400만 원 초과	630만 원 + 1,400만 원 초과금액의 10%

### ◎ 인적공제 (상세내역 [연금 소득자 소득·세액공제 신고사항 알아보기](#) 참조)

### ◎ 과세표준액<소득세법 제14조 제2항>

과세대상 연금소득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(기본·추가공제)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됨

### ◎ 세액의 계산<소득세법 제55조>

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 차등 적용(6~45%)

★ 세율표

종합소득 과세표준	세 율
1,4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%
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84만원 + (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)
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624만원 + (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)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1,536만원 + (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)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,706만원 + (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%)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9,406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%)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억7,406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%)
10억원 초과	3억8,406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%)

### ◎ 원천징수 세액 정산

산출세액이 산정되면 **표준세액공제** 및 **자녀세액공제**를 적용한 후 당해연도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면 차감 원천 징수세액 산정